

## 엔캠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동의서

당사 OOOOO는 '엔캠 협력사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당사는 본 행동규범을 숙지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엔캠과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엔캠과 거래하는 협력사로서 본 행동규범의 의무 위반이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과 만약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엔캠이 당사에 서면통지를 하여 시정 요구, 거래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2. 엔캠 또는 엔캠이 지정한 자가 당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설문 또는 현장방문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영업활동,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가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캠의 요청에 협조하고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캠으로부터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엔캠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관련 시설, 자료, 인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본 행동규범의 위반을 즉시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당사의 하청업체 또는 공급상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에도 이들에게 동일하게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3. 당사는 당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당사의 협력사에게도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전달하여 준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4. 당사는 본 행동규범이 엔캠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공급계약과 본 행동규범 간 불일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행동규범이 우선합니다.
5. 당사는 모든 확인된 리스크와 이에 대해 취한 후속 조치에 대한 문서와 기록을 엔캠이 요청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본 행동규범의 위반 사항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엔캠에 이를 통지하겠습니다.

[        ] 년 [        ] 월 [        ] 일

회사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주식회사 엔캠 귀중

## 엔캠 협력사 행동규범

엔캠은 글로벌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소재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환경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협력사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지켜야 하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엔캠 협력사 행동규범'은 엔캠의 협력사 또한 이러한 우리의 사회적 책임과 노력에 동참할 것을 희망하며 기대하는 바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제 규범 및 기준,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엔캠과 협력사가 상호 노력을 통해 본 행동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과를 이루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엔캠 협력사 행동규범'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 1. 공급망 실사의무 국제규정 준수

- 1) EU CSDDD 지속가능 기업실사 규정
- 2) 프랑스 기업실사 의무법
- 3) 독일 기업공급망 실사법
- 4) 영국 현대판 노예방지법
- 5) 네덜란드 아동노동 실사의무, 미국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
- 6) 관련 광물을 위한 OECD 실사가이드 (별첨1 참조)

### 2. 통상 연계제재 국제규정 준수

- 1) 미국 UFLPA 규정
- 2) EU 강제노동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정
- 3) EU 탄소국경제도(CBAM)

### 3. 기업 및 제품정보 공개의무 준수

- 1) EU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 2) USA SEC 기후공시 규칙
- 3) EU 지속가능한 에코디자인규정(ESPR)

#### 4. 인권과 노동 규정 준수

- 1) 법적 최소 근로 연령에 미달하는 아동의 고용을 금하며, 청소년 노동 또한 법적 최소 근로 연령과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준수합니다.
- 2) 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정 등 강제 노동, 착취 노동 등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을 금지하며, 자국언어로 명확한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3) 채용과 승진, 보상, 훈련의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출신, 장애, 임신, 종교, 정치성향, 노조가입, 결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 4) 모든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성희롱,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 5) 최대 근로시간 및 일수, 최저 임금, 복리후생, 노동시간 및 보상 등 관련 법적 기준을 모두 준수합니다.
- 6) 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차별이나 보복, 협박,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5. 윤리경영 실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여 부당취득 및 뇌물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는 엄격히 금지하며, 반부패 관련 모든 법적 기준을 준수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의 기밀유지와 보호를 보장합니다.

#### 6. 건강 및 안전 최우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주거지를 제공할 경우) 위험요소 평가 및 제거, 지속적인 교육과 비상대응 훈련, 개인 보호장비 제공 등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 7. 환경 지속가능성 체계 유지

- 1) 모든 필수 환경 인허가 사항을 취득, 최신본으로 유지하고, 유해물질, 폐기물 및 해수, 대기오염, 자원 사용 등 제조 공정에 있어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2) 엔캠프의 요청에 따라 생산, 제품, 운송과 관련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실시하고, 해당 평가를 뒷받침하는 환경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제품 생산 시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엔캠과 협조해야 합니다.

## 8. 책임있는 광물 구매

1) 심각한 인권 유린, 건강 또는 안정상의 위험, 수자원 고갈, 폐기물, 오염 등의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비윤리적 또는 부적합 방법을 통해 취득한 "관련 광물" (별첨2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 엔캠이 승인 공급상으로부터만 관련 광물을 구매하고, 엔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위 공급망 (Upstream supply chain) 내 공급상들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엔캠에 공급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를 공급받고자 하는 신규 공급상에 대해서는 엔캠이 해당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엔캠에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3) 관련 광물의 채굴, 가공 과정에 존재하는 공급망 위험을 식별, 완화, 해결하여야 합니다. [별첨 1]에서 정의한 분쟁 지역 및 고위험 지역으로부터의 관련 광물의 원산지 및 공급선에 대한 정책을 개발, 실행하고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가이드(이하, "OECD 실사가이드")'를 포함한 모든 적용 법률 및 국제 산업 기준에 따라 (별첨 1에서 상세 기술한 바에 따름) 실사(due diligence)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권, 환경, 건강 및 안전에 관해 엔캠이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른 엔캠의 실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OECD 실사가이드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제련소 또는 정제소에서 처리된 관련 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공급상에게도 이를 동일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관련 광물의 공급상이 OECD 가이드와 지속가능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엔캠의 요구에 따라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OECD 실사가이드 및 엔캠의 보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시한 실사 자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6) 본 행동규범의 책임있는 광물 구매 항목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엔캠의 모든 직, 간접 손해를 배상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장래 유사한 사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조치에는 대체 수급 결정 또는 광물 교체가 포함됩니다.

## 9. 고충 신고 시스템 구축

1)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에 따라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별첨1]

[관련 광물을 위한 OECD 실사가이드 - 5단계 프레임]

번호	단계	내용
1	강력한 회사 경영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사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실사정책 및 시스템구축(OECD 실사 가이드 Annex II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 식별</li> <li>- 리스크 예방 및 완화</li> <li>- 공급망 실사에 대한 제3자의 검증 또는 검사(audit)</li> <li>- 관련 리스크 보고를 위한 장치</li> </ul> </li> <li>• 향상된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에 기하여 OECD 실사가이드 및 본 행동규범과 일관된 실사 정책의 수립, 그와 관련된 정보 완전성(integrity)을 기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 작업 수행</li> <li>• 협력사 포함 이해관계자에 실사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를 전달 (계약서 내 관련 조항 포함)</li> <li>• 공급망 이력관리</li> </ul>
2	공급망 내 리스크 식별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망 리스크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어도 1년 1회 또는 엔캠 요청 시 추가로 실시</li> <li>- 공급망 매핑(mapping)은 관련 광물과 연관된 하청업체와 공급상에 관한 식별 및 위치정보, 관련 광물의 모든 원산지 국가 정보를 포함해야 함</li> </ul> </li> <li>• OECD 실사가이드 Annex II 에 근거한 협력사 리스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캠과 기타 정보원이 확인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진 리스크 검토와 조사</li> <li>- 엔캠이 요청하는 리스크 매핑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li> </ul> </li> </ul>
3	식별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행 및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단계에서 확인된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 평가들 간의 보고 격차 해소</li> <li>- 해당 공급망 주체들에게 예방, 완화 및 해결 조치를 취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청</li> <li>- 필요한 공급망/리스크 매핑과 리스크 해소 및 검증 또는 검사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 공급망 주체와의 거래 관계 종료</li> </ul> </li> <li>• 리스크 평가 결과 및 관리 계획에 대해 고위 경영진(임원급)에게 보고</li> </ul>
4	공급망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실사가이드에 근거한 실사 실시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검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리스크에 대한 제3자 검증 또는 검사에 참여</li> <li>- 리스크 관리 개선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li> <li>- 확인된 검증 또는 검사의 격차에 대비하고 개선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li> <li>- 엔캠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 제3자 검증 및 검사와 관련된 사항개선</li> </ul> </li> </ul>
5	공급망 실사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사결과 공개(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업보고서 등)</li> <li>• 광물 공급망 전반으로부터 보고를 취합하기 위해 공급망 매핑 정보를 엔캠 또는 공인된 제3자에 제공</li> <li>• 기존 제공한 정보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나 신규 정보 보고</li> </ul>

[별첨 2] 책임있는 광물정책 관련 대상광물 정의

대상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분쟁 지역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하는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 흑연 및 기타 엔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광물 또는 원재료
분쟁 지역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콩고,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고위험 지역	환경 피해, 건강, 안정상의 위험이 있거나 정치 불안정 또는 탄압, 취약한 보호시설, 치안 불안정, 시민 기반 시설의 붕괴 및 광범위한 폭력 위험이 있는 지역

[별첨 3] 엔캠 협력사 행동규범' 참조 자료

다음 기준은 본 규범을 작성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추가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RBA Code : <http://www.responsiblebusiness.org/code-of-conduct/>

IL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 [www.ilo.org/global/standards/lang-en/index.htm](http://www.ilo.org/global/standards/lang-en/index.htm)

ISO 14001 : [www.iso.org](http://www.iso.org)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www.oecd.org](http://www.oecd.org)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 <http://www.oecd.org/investment/mne/mining.htm>

SA8000 and SAI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 <http://www.sa-intl.org/>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 [www.unglobalcompact.org](http://www.unglobalcompact.org)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www.un.org/Overview/rights.html](http://www.un.org/Overview/rights.html)